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75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김교홍 · 서미화 · 박용갑
서영석 · 김 윤 · 남인순
정일영 · 문진석 · 윤준병
전종덕 · 김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변화로 사회적 고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 고용 · 주거 · 건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고립 문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정책 범위를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하고, 범부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이 법의 규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법안의 목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회적 고립 방지로 정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결과 및 고독사 통계 결과발표 의무가 있음(안 제10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함(안 제15조).
- 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이 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의 실무위원장으로 역할을 함(안 제16조).
- 사.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개발 및 사업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광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 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함(안 제18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서 시행하는 사회적 고립 위험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사회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회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거나 사회적 고립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자(이하 “사회적 고립 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위험자를 사회적 고립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현황 파악,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사회적 고립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사회적 고립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교육
8. 사회적 고립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9. 사회적 고립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사회적 고립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3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

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등

제10조(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발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 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독사 통계 작성 정보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장 정보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고독사 사망자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 및 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공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제공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고립통합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위험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원대상자”는 “사회적 고립 위험자”로 본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회적 고립 위험자 지원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 ①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의 관계부처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에 대하여 심의·조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3. 사회적 고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 ①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을 둔다.

②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겸임한다.

③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지원 및 평가, 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간 협조·조정 등의 실무를 총괄하고, 전담 조직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⑤ 사회적 고립 정책 담당 차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조직을 둔다.

제17조(사회적 고립 예방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중앙 사회적 고립 예

방 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 고립 예방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지원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3.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광역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의 관리
4. 사회적 고립 예방 홍보 및 전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5.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발굴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적 고립예방 정책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광역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특화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 개발·제공 및 기반 조성
2.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 서비스 제공 및 연계
3. 지역 내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 발굴
4. 그 밖에 지역의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광역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중앙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광역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사회적 연결의 날) ①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2월 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하고, 사회적 연결의 날부터 1주일을 사회적 고립 연결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사회적 고립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사회적 고립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가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